

연구실 폐기물 관리 규정

<제정 2022.04.21.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연구, 실험 및 실습 중 발생하는 연구실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연구실(“실험실, 실습실, 실험준비실”을 포함한다)에서 발생하는 “지정폐기물” 및 “의료폐기물”에 적용한다.

제 3 조 (폐기물 종류) 연구실 폐기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세척 폐수: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각종 실험장비 및 초자류 등에 묻어있는 특정 유해물질을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말한다.
2. 폐액: 연구, 실험 및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액체상태의 고농도 용액으로 산 폐액, 알칼리 폐액, 비할로젠계 유기폐액, 할로젠계 유기폐액, 무기계 폐액, 기타 폐액으로 구분한다.
3. 고형폐기물: 고체상태로 발생하는 실험실 폐기물로 특정유해물질이 묻어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물질로 빈시약/약품병, 깨진 초자류, PCB, 유해물질 포장지류, 오염여과지, 온도계 등을 포함한다.
4. 폐시약: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시약 중 실험에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를 요하는 시약을 말한다.
5. 의료폐기물 : 「폐기물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 별표 2 에서 규정하는 폐기물로 격리의료, 조직물류, 병리계, 손상성, 생물·화학, 혈액오염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구분하며,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폐기물도 포함한다.

제 4 조 (폐기물 처리절차) 연구실 폐기물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세척 폐수: 실험 -> 각종 장비 및 초자류 세척 -> 세척폐수 발생 -> 폐수저장소 -> 위탁처리
2. 폐액: 실험 -> 폐액 발생 -> 폐액저장소 이동/보관 -> 위탁처리
3. 고형폐기물: 실험 -> 고형폐기물 발생 -> 임시저장소 이동/보관 -> 위탁처리
4. 폐시약: 실험 -> 폐시약 발생 -> 실험실 보관 -> 처리일 및 장소 지정/통보 -> 위탁처리
5. 의료폐기물: 실험 -> 의료폐기물 발생 -> 실험실 보관 -> 위탁처리

제 5 조 (폐기물 관리 시 유의사항) ①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 및 임시 보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.

1. 폐기물은 누출되지 않는 용기 및 안정화한 용기를 이용하여 수집 및 보관한다.

3-2-24 연구실 폐기물 관리 규정

2. 폐기물은 물리적, 화학적 위험요소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 및 보관한다.
3. 연구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한다.
4. 의료폐기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냉동보관 및 전용용기에 덮개를 부착하여 보관한다.

②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.

1. 세척 수는 반드시 전용 싱크대에 배출하여야 한다.
2. 폭발, 화재, 유독가스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 배출한다.
3.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조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.
4. 시약병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한다.
5. 실험실 폐기물 이외의 일반 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.
6. 의료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배출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폐기물 수거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.

1. 수거된 폐기물은 위탁처리 전까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.
2. 수거된 폐기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 시 유의한다.

제 6 조 (폐기물 운반) 폐기물 운반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폐기물 운반 시 운반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.
2. 폐기물 운반 시 안전장비(고글, 내화화장갑, 긴소매, 긴반지, 운동화 등)를 착용하고 운반을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폐기물 처리)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다.
2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3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폐기물 유출 및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기록 및 보존) 폐기물 관리대장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(단,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)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